

사업체노동력조사 시범조사

['21.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]



고용노동부

지방관서	사업체 고유번호				
※	※				

※ 이 항목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입합니다.

- ➡ 이 조사는 **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**로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.
- ➡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,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
사 업 체 명 칭	
사 업 체 소 재 지	

1 귀사의 3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수는 몇 명입니까? (명)

휴업조치 및 휴직에 관한 사항

2 귀사는 3월 중 휴업조치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? <근로시간 단축 등의 휴업조치 포함>

- ☐ 있었음 → 2-1, 2-2번 응답 ☐ 없었음 → 3번 응답

2-1 휴업조치의 유형은 무엇입니까? <중복응답 가능, 해당란에 ✓ 표시>

- ☐ 일시적으로 사업체 전체의 조업(영업)을 중단
☐ 사업체 내 일부 근로자만 근로
☐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
☐ 기타 (

2-2 휴업조치기간 중 적용근로자에게 금품(임금, 휴업수당 등의 현금 및 현물)을 지급한 상황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. <인원수는 순인원으로 작성>

		휴업조치 전체		
		코로나19 영향에 의한 휴업조치	기타 휴업조치(사업주 개인사정, 계절성 사업체 등)	
전체		명	명	명
	지급	명	명	명
	미지급	명	명	명

3 귀 사는 3월 중 휴직자가 있었습니까? <휴업조치에 의한 적용근로자(문항2-2)는 휴직자에 미포함>

- ☐ 있었음 → 3-1번 응답 ☐ 없었음 → 4번 응답

3-1 휴직근로자의 휴직기간 중 금품(임금, 휴업수당 등의 현금 및 현물)지급 상황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. <인원수는 순인원으로 작성>

		휴직 전체		
		코로나19 영향에 의한 휴직	기타 휴직(육아휴직, 산재휴직 등)	
전체		명	명	명
	지급	명	명	명
	미지급	명	명	명

4 귀 사는 3월 마지막 영업일 이후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휴업조치 또는 휴직을 실시할 예정입니까?

- ☐ 예 → 4-1번 응답 ☐ 아니오 → 5번 응답

4-1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휴업조치 또는 휴직 실시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? <중복응답 가능, 해당란에 ✓ 표시>

구분 \ 기간	1개월 미만	1~3개월 미만	3~6개월 미만	6개월 이상
금품 지급				
금품 미지급				

조업(영업)시간 및 근로시간 변화에 관한 사항

5 귀 사는 정상조업(영업)시간 대비 3월 중 조업(영업)시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?

- ☐ 있었음 → 5-1번 응답 ☐ 없었음 → 6번 응답

5-1 조업(영업)시간에 변화가 있었다면,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? <해당란에 ✓ 표시>

- ☐ 연장 ☐ 10% 미만 단축 ☐ 10~30% 미만 단축 ☐ 30~50% 미만 단축 ☐ 50% 이상 단축

6 귀 사는 3월 마지막 영업일 이후 조업(영업)시간을 단축할 계획이 있습니까? <해당란에 ✓ 표시>

- ☐ 계획 없음 ☐ 1개월 미만 단축 ☐ 1~3개월 미만 단축 ☐ 3~6개월 미만 단축 ☐ 6개월 이상 단축

7 귀 사는 평소 근로시간 대비 3월 중 근로자의 월평균 실근로시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?

- ☐ 있었음 → 7-1번 응답 ☐ 없었음 → 7-2번 응답

7-1 있다면,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(✓)하십시오.

(단위: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근로시간)

초과근로시간	☐ 연장 ☐ 무변동	☐ 10% 미만 단축	☐ 10~30% 미만 단축	☐ 30~50% 미만 단축	☐ 50% 이상 단축
소정실근로시간	☐ 연장 ☐ 무변동	☐ 10% 미만 단축	☐ 10~30% 미만 단축	☐ 30~50% 미만 단축	☐ 50% 이상 단축

시범조사표 작성요령

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수

-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본조사와 동일한 종사자수로 상용+임시일용+기타종사자를 의미

휴업조치란?

-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(예: 코로나19)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회사가 임시로 조업(영업)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말함

휴업조치 유형 및 휴업조치기간 중 적용근로자(예시)

【 예 시 】 평소 4명 근로자가 근로하고, 근로자 1인당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체의 휴업조치

* A, B, C, D는 근로자 개인을 의미

유형1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

유형2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8시간 근로	8시간 근로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

유형3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6시간 근로	6시간 근로	6시간 근로	6시간 근로

유형4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6시간 근로	6시간 근로	8시간 근로	8시간 근로

유형5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6시간 근로	6시간 근로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

유형6	근로자			
	A	B	C	D
소정 근로 시간 8시간	6시간 근로	8시간 근로	0시간 근로	0시간 근로

- (유형1) 일시적으로 사업체 전체의 조업(영업)을 중단한 경우, 적용근로자: 4명(A, B, C, D)
- (유형2) 사업체 내 일부 근로자만 근로한 경우, 적용근로자: 2명(C, D)
- (유형3)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, 적용근로자: 4명(A, B, C, D)
- (유형4) 일부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, 적용근로자: 2명(A, B)
- (유형5) 사업체 내 일부 근로자만 근로하고, 근로한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, 적용근로자: 4명(A, B, C, D)
- (유형6) 사업체 내 일부 근로자만 근로하고, 근로한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, 적용근로자: 3명(A, C, D)

조업(영업)시간 변화 계산

- 정상조업(영업)시간 대비 조사기준월의 조업(영업)시간 비율로 계산
↳ 단, 사업체 내 조업(영업)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생산라인별, 영업부문별 등 조업(영업)시간을 계산 후 평균

【 예 시 】 정상 조업(영업)일 20일에 1일 8시간 조업하는 사업체에서 조사기준월 조업일 20일에 1일 6시간 조업한 경우】

$$100 - \left(\frac{120\text{시간}(20\text{일에 } 1\text{일 } 6\text{시간 조업})}{160\text{시간}(20\text{일에 } 1\text{일 } 8\text{시간 조업})} \times 100 \right) = 100 - 75 = 25\% \text{ 단축}$$

근로자(평균)의 실근로시간 변화 계산

- 평소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근로시간 대비 조사기준월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비율로 계산
(소정근로시간이 아님에 주의)

【 예시1 】 평소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160시간 근무하는 사업체에서
3월 중 전체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140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경우】

$$100 - \left(\frac{140\text{시간}}{160\text{시간}} \times 100 \right) = 100 - 87.5 = 12.5\% \text{ 단축}$$

【 예시2 】 5명의 근로자가 있고 평소 전체근로자 1인당 160시간 근무하는 사업체에서
휴업조치로 3월 중 1명은 근무하지 않고, 4명만 평소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】

$$100 - \left(\frac{(160\text{시간} \times 4\text{명}) / 5\text{명}}{160\text{시간}} \times 100 \right) = 100 - \left(\frac{128\text{시간}}{160\text{시간}} \times 100 \right) = 100 - 80 = 20\% \text{ 단축}$$